

이 사 회 의 사 록

개 최 일 자	참 석 이 사	의 안 내 용	가결여부	비 고
제3회 이사회 2010. 4. 16	○ 의 장(1) : 김성현 ○ 상임이사(2) (송 혁, 구자선) ○ 비상임이사(4) (오채천, 박옥수, 박상국, 구봉균) ○ 당연직이사(2) (이미령 경영기획국장, 서철호 건설교통국장)	○ 의안번호(제7호) : 광진구시설관리공단 2009 사업결산 심의·의결 - 세 출 : 11,516,540천원 - 세 입 : 11,516,540천원	원안의결	
		○ 의안번호(제8호) :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 중 일부 개정안 심의·의결 - 제3조(용어의정의) 제5호(성과연봉), 제7호(기관성과급)을 기관성과급과 개인성과급을 통합으로 직원인센티브성과급으로 변경하고, 제25조(개인성과급 지급) 및 제26조(기관성과급지급)는 성과급 통합으로 삭제 - 제9조(연봉의 지급일) : 성과연봉은 경영평가결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 지급변경 - 연봉제규정일부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함.	원안의결	
		○ 의안번호(제9호) :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공연장운영규정 중 일부 개정안 심의·의결 - 제12조(대관료감면) 제2항 우수작품 및 대관유치시 공단의 별도의 절차를 통해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. 신설조항은 - 제2항 신설조항은 광진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시행규칙 제26조대관료감면은 광진구청 시행규칙 이므로 먼저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할 사항인바, 공단규정 제12조 개정안은 현행대로 하고, 나머지 제13조 대관신청 및 절차 등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함.	수정의결 원안의결	제12조 (수정의결)